

## 서울특별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980호
2. 발 의 자 : 박유진 의원 등 19명
3. 발의일자 : 2025년 08월 11일
4. 회부일자 : 2025년 08월 14일

### II. 제안이유

- 2022년 기준 전국 1인 창조기업의 수는 1,007,769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22.4%인 225,331개의 1인 창조기업이 서울에 소재함.
-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문화콘텐츠와 같은 분야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후에도 무형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따라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설립을 촉진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III. 주요내용

- 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라.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7조)

#### **IV.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 2. 1인 창조기업 현황과 조례안의 입법배경

- 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sup>1)</sup>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sup>2)</sup>를 의미함. [참고자료]
- 2022년 기준 전국 1인 창조기업은 총 100만 7,769개로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23.6%임.<sup>3)</sup>

#### < 전국 1인 창조기업 수(2018~2022년) >

| 2018     | 2019     | 2020년    | 2021년    | 2022년      | 연평균 증가율 |
|----------|----------|----------|----------|------------|---------|
| 427,367개 | 458,322개 | 917,365개 | 987,812개 | 1,007,769개 | 23.6%   |

출처: 창업진흥원, 연도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2024년 기준 1인 창조기업의 평균 고용종사자 규모는 0.9명, 자본금은 6천 7백만원, 평균 매출액은 2억 3천 6백만원이며, 기업형태는 법인기업(14.1%)보다는 개인사업체(85.9%)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sup>4)</sup>

1) ▶ 창의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독창적인 산물이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 ▶ 전문성: 해당 분야의 교육·연수를 이수하였거나 전문자격을 취득한 경우 또는 경력이나 프로젝트 수행능력 및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것(「1인 창조기업 지원 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3)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1인 창조기업은 지식·기술·창의력을 기반으로 개인이 창업하는 형태로,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혁신 아이디어 실현의 창구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또한 창업 장벽이 낮고 유연성이 높아 신속한 시장 진출과 신사업 창출이 가능해 고용시장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IT, 디자인,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 확장과 혁신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1인 창조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및 창업활성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9년에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고 2011년에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1인창조기업법」”)을 제정하였으며, 동 법에 따라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이를 토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sup>5)</sup>의 운영을 통해 사무공간과 편의시설 제공, 법률·회계 등 전문가 자문, 판로 개척 및 투자유치 지원 등 1인 창조기업의 창업·안정화·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원내용 >

| 구 분    | 주요내용                                        |
|--------|---------------------------------------------|
| 사무공간   | • 개인데스크, 편의시설 (회의실, 빔프로젝트, 라운지, 사무용 집기 등)   |
| 경영지원   | • 세무, 회계, 법률, 창업, 마케팅, 사업·유망산업, 파트너십 구축 등   |
| 교육·멘토링 | • 사업모델(BM) 개발, 아이템 검증, 교육·투자 등              |
| 네트워킹   | • 지역별·업종별, 입주·졸업 기업간, 1인 창조기업·우수 창업기업간 네트워킹 |

출처: 창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sed.or.kr>)

4)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5)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시설로 전국에 42개 센터가 있으며, 서울에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임.

- 다만 「1인창조기업법」 제정 당시에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만을 특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이후 정부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에 따라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만 제외’ 하도록 개정(2015.2.3.)되어 사실상 대부분의 소상공인 업종과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함.<sup>6)</sup>
- 이로 인해 정부 정책의 효과성 약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등 다른 지원사업과의 차별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1인창조기업법」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유관 법률과 통폐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서울시에는 전국 1인 창조기업의 22.6%인 22만 7,370개가 소재하고 있으며<sup>7)</sup>, 이는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치임에도 소상공인 및 창업기업 전반에 대한 지원 외에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지원사업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 >

(단위: %)

| 수도권 (56.6) |      |     | 비수도권 (43.4) |     |     |     |     |     |     |     |     |     |     |     |     |     | 계   |
|------------|------|-----|-------------|-----|-----|-----|-----|-----|-----|-----|-----|-----|-----|-----|-----|-----|-----|
| 경기         | 서울   | 인천  | 부산          | 경남  | 대구  | 경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광주  | 대전  | 충북  | 강원  | 울산  | 제주  | 세종  |     |
| 28.5       | 22.6 | 5.5 | 6.2         | 6.0 | 4.6 | 4.3 | 3.5 | 2.7 | 2.8 | 2.5 | 2.5 | 2.5 | 2.3 | 1.7 | 1.1 | 0.7 | 100 |

출처: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또한 기존 창업지원 정책은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 법인 중심 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주로 개인사업체 형태인 1인 창조기업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동 조례안은 1인 창조기업의 창업활성화와 성장기반 마련을 통해

6) 한국법제연구원(2024),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검토 연구용역」.

7)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서울시 차원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 혁신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판단됨.

- 참고로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원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8개 광역자치단체와 성동구, 완주군 등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임.

#### <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관련 타 광역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 >

| 구분 | 조례                           | 제정일         |
|----|------------------------------|-------------|
| 강원 | 강원특별자치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22.12.23. |
| 부산 | 부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023.03.01. |
| 경남 | 경상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23.11.09. |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24.04.12. |
| 충남 |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2024.04.30. |
| 경기 | 경기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4.10.11. |
| 충북 |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4.12.27. |
| 울산 | 울산광역시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2025.07.03. |

###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 가. 조문 구성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 조례안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 조례안은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 면에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을 대체적으로 준수하고 있음.

## 나. 1인 창조기업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정의 규정으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를 동 조례안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1인창조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1인창조기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청년 1인 창조기업”이란 39세 이하인 청년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1인 창조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제2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②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1인 창조기업 인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업종 및 운영형태 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39세 이하인 청년(이하 이 조에서 “청년”이라 한다)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이 조에서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청년인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수가 청년이 아닌 회사대표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정한다.
2. 청년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

- 다만 1인 창조기업 업종과 소상공인 업종이 대다수 중복되는바, 서울시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일반적인 소상공인과 구분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 다. 육성계획 수립·시행(안 제5조)

- 안 제5조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육성계획에는 ▶1인 창조기업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창업지원 및 기반 조성,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1인 창조기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조례안에는 육성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바, 「법령안 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책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하는 중장기적 계획을 규정할 경우 수립권자, 수립 사항과 함께 수립주기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sup>8)</sup>는 점에서 육성계획의 수립주기를 몇 년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중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동 조례안의 상위법에 해당하는 「1인창조기업법」에서는 육성 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

8) 법제처(2024),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82~83.

## 라. 실태조사(안 제6조)

- 안 제6조는 안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실태조사는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인 창조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개발 및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정부는 「1인창조기업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12년부터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내용 등이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 「1인창조기업법」

**제6조(실태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마. 지원사업(안 제7조)

- 안 제7조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 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마케팅 및 판로 확보,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자금 지원 연계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24년에 실시된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sup>9)</sup>를 살펴보면, 1인 창조기업은 창업 시 사업 타당성 분석, 사무실 확보, 자금조달, 업종 선정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영 과정에서는 판로확보, 홍보 및 마케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안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나 자금조달, 투자처 및 판로 확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1인 창조기업들을 발굴하여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고 성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1인 창조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1인 창조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이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기존 소상공인 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1인 창조기업만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           |
|-------|-----------|
| 입법조사관 | 연락처       |
| 신현두   | 2180-8055 |

---

9)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참고자료〕 1인 창조기업 업종 포함 상품 및 서비스

| 구분   | 해당 산업                        | 해당 상품 및 서비스                                                                                                                       |
|------|------------------------------|-----------------------------------------------------------------------------------------------------------------------------------|
| 농림어업 | 농업                           | 작물 재배, 곡물 및 식량작물 재배, 화훼작물 및 종묘 재배, 종자 및 묘목 재배, 과실작물 재배 등                                                                          |
|      | 임업                           | 임업, 영림업, 육림업, 벌목, 임산물 채취 등                                                                                                        |
|      | 어업                           | 어업, 양식 어업, 수산물 부화 등                                                                                                               |
| 제조업  | 식료품 제조업                      | 육류, 수산물 가공 및 저장 처리, 동식물 유지, 낙농 제품 제조, 병과류 제조,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등 제조업                                                              |
|      | 음료 제조업                       | 알콜음료, 발효주, 탁주, 증류주, 비알콜음료, 생수 생산, 얼음 등 제조                                                                                         |
|      | 섬유제품 제조업                     | 면 방직, 모 방직, 하학섬유 방직, 직물 제조, 천막, 자수제품, 날염 가공, 특수사 제조, 부직포 및 펄트, 끈 제조, 카펫, 커튼, 홈패션 등 제조                                             |
|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용품 제조업        | 정장, 한복, 근무복 및 작업복, 가족의복, 모피, 인조모피, 편조의복, 모자 등 제조                                                                                  |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원피가공, 핸드백, 지갑, 구두, 신발부품 등 제조                                                                                                      |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 목재, 특정 목적용 제재, 목재 보존 및 방부처리, 합판, 강화목, 유사 적층판, 목재문, 강화 및 재생 목재, 목재 상자, 깔판, 돗자리, 코르크 등 제조                                           |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특수표면처리종이, 골판지, 위생용 종이제품, 벽지 등 제조                                                                                    |
|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제책, 스크린 인쇄, 제판, 기록매체 등 복제                                                                                                         |
|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 기초유기 및 무기 화학물질, 석유화학, 천연수지, 나무화학물질, 산업용 가스, 염료, 안료, 비료, 질소화합물, 고무, 재생 플라스틱원료, 합성수지, 살충제, 잉크, 페인트, 도료, 화장품, 실내가향제, 화학섬유, 재생섬유 등 제조 |
|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 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의약품 화합물, 항생물질, 의약품, 완제 의약품, 한의약품, 의료용품 등 제조                                                                      |
|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타이어, 고무의류, 플라스틱 필름, 피복용 플라스틱, 플라스틱 창호,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등 제조                                                                          |
|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유리, 유도자기, 점토벽돌, 시멘트, 석회, 플라스틱, 콘크리트, 레미콘, 섬유시멘트, 석제품, 연마제, 석면 등 제조                                                                |
|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금속 문, 창, 셔터, 구조용 금속판제품, 금속탱크, 중앙난방보일러,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무기 및 총포탄, 금고 등 제조                                                            |
|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반도체소자, 전자접속카드, 컴퓨터, 통신장비, 방송장비 등 제조                                                                     |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방사선 장치, 치과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 항행용 무선기기, 측량기구, 안경, 광학렌즈 등 제조                                                                           |
|      | 전기장비 제조업                     | 전동기, 발전기, 변압기, 일차전지, 축전지, 절연선 및 케이블, 전구, 가정용 전기장비 등 제조                                                                            |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내연기관 및 터빈, 유압기기, 산업용 트럭, 산업용 오토, 공기조화장치,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주문기계, 산업용 기계, 산업용 로봇 등 제조                                                   |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자동차, 자동차 엔진, 트레일러, 자동차 부품 등 제조                                                                                                    |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선박 및 보트, 합성수지선,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철도장비, 항공기, 전투용 차량, 모터사이클 등 제조                                                                       |
|      | 가구 제조업                       | 침대, 운송장비용 의자, 소파, 목재가구, 나전칠기가구, 금속가구 등 제조                                                                                         |
|      | 기타 제품 제조업                    | 귀금속, 모조 장식용품, 악기, 운동 및 경기용품, 인형, 장난감, 영상 게임기, 조화 및 모조 장식품 등 제조                                                                    |

| 구분                       | 해당 산업                      | 해당 상품 및 서비스                                                                                                                       |
|--------------------------|----------------------------|-----------------------------------------------------------------------------------------------------------------------------------|
|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건설·공업용 기계, 전기·전자 및 정비 기기 등 산업용 기계·장비 및 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                                                                            |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온라인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든 전자상거래 중개업무를 담당하는 산업                                                                  |
|                          | 전자상거래 소매업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신망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                                                                                                |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출판업                        |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간행물 발행 등                                                                                                 |
|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빌드모션, 교구, 방송광고 콘텐츠, 홍보영상, 영화배급, 애니메이션제작, 영상CD, 비디오시청 제공업, 녹음서비스, 음반제작, 동영상제작, 영상 제작 지원 등                                          |
|                          | 방송업                        | 1인 미디어 영상 제작, 유선방송, 인터넷방송, 케이블TV 전송망 산업, 실무방송교육, 공익광고 촬영 등                                                                        |
|                          | 통신업                        | 우편물 취급, 별정통신, CCTV보안설치, 편지 발송, 데이터 복구 등                                                                                           |
|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IoT개발, 홈페이지 제작, 스마트체중계, 프로그래밍, 어플 개발, 자수 프로그래밍, 디자인 프로그램, 웹디자인, 시스템 통합 개발, 컴퓨터 서버 관리, 자료처리업 등                                     |
|                          | 정보서비스업                     | 교육콘텐츠, 온라인 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인터넷 뉴스 제공, 인터넷 신문, 증권 컨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등                                                          |
| 금융 및 보험업                 | 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             | 금융 거래 결제 및 처리(이체, 지불 등) 서비스, 어음/수표 교환 서비스, 지불 결제 사업자(PG) 서비스, 외국환 서비스, 증권 및 파생상품 이외의 금융자산 중개, 대부 중개 서비스 등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 신약개발, 의료기개발, 로봇제조, 유전자증폭장치연구, 에너지 절감장치, 줄기세포, 나노전자소자, 화장품 원료, 사료첨가제, 실험용 의료기기, 에너지 개발 등                                           |
|                          | 전문서비스업                     | 소셜브랜딩 솔루션 제공, 광고제작, 법무 서비스, 회계 서비스, 세무서비스, 공장 유해 및 위험성 평가 작성 서비스, 경영지원 진단 서비스, 파이프 정보제공, 수출컨설팅, 출입국 비자대행서비스, 행정 제출 서류 대행, 금융컨설팅 등 |
|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기계설계, 건축설계, 감리, 토목설계, 소음측정, 측량, 지질조사 등                                                                                            |
|                          |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수의업, 전문디자인, 사진촬영, 인테리어 디자인 등                                                                                                      |
|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소독 및 방제 등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인력 공급, 고용 알선, 여행사 및 여행보조, 여행 예약 서비스, 경비, 경호, 보안시스템 서비스 등                                                                          |
| 교육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                     | 스포츠 교육, 예술학원, 레크리에이션 교육, 운전학원, 컴퓨터 학원, 방문교육, 외국어학원, 온라인 교육학원, 체험학습, 미술 교육, 공예강좌, 로봇교육서비스, 자격증교육, 기업체 출강, 홈패션 강의 등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공연, 문화콘텐츠 제작, 미술 전시 서비스, 마술, 작곡, 공연기획, 공연지원, 독서실, 박물관, 자연공원 등                                                                     |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통신장비, 소비용 가전제품, 가구 및 가정용 비품, 의류 및 액세서리, 악기 및 취미용품 등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을 전문적으로 수리·유지                                       |

출처: 창업진흥원(2025), 「2024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6~8.